

# 2021년도 05월 대관 공고

다목적홀 · 다목적체육관 · 세미나실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 다목적홀, 다목적체육관, 세미나실에 대한 2021년 05월 대관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04. 12.

화성시근로자종합복지관장[직인생략]

## ■ 대관시설 안내

| 시설명                   | 인원제한  | 사 용 료                                 | 부대시설                | 비고   |
|-----------------------|---|---------------------------------------|---------------------|--|
| 다목적홀<br>491.64㎡       | · 좌석: 99석<br>(장애인석8석포함)<br>· 회의 및 교육<br>(체육활동, 대규모행사 금지)  | 근로자(단체): 50,000원<br>일 반(단체): 100,000원 | 유·무선마이크,<br>빔프로젝터   |  |
| 다목적<br>체육관<br>857.65㎡ | · 관람석: 99석<br>(장애인석8석포함)<br>· 회의 및 교육<br>(체육활동, 대규모행사 금지) | 근로자(단체): 30,000원<br>일 반(단체): 60,000원  | 유·무선마이크,<br>샤워, 탈의실 | · 1회 2시간 기준<br>· 1시간 초과시<br>20/100을 가산<br>· 1시간 미만은<br>1시간으로 간주<br>· 부대시설 무료사용 |
| 세미나실<br>149.07㎡       | · 좌석: 25석<br>· 회의 및 교육<br>(체육활동, 대규모행사 금지)                | 근로자(단체): 25,000원<br>일 반(단체): 50,000원  | 유·무선마이크,<br>빔프로젝터   |  |

※ 자세한 기술 자료는 홈페이지(<http://www.hscitywc.or.kr>) - 대관안내 참고

## ■ 접수 일정

- 공고기간 : 2021년 04월 12일(월) ~ 04월 18일(일)
- 접수기간 : 2021년 04월 19일(월) ~ 04월 23일(금)
- 대관기간 : 2021년 05월 01일 ~ 05월 31일(일요일 미운영)

## ■ 접수 방법 :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홈페이지(<https://reserve.hscity.go.kr/index.do>) 접수

★홈페이지 알림마당→'공지사항' 또는 '자주하는 질문'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대관 접수방법 매뉴얼 참조★

## ■ 제출서류

### ◆ 근로자(단체) 서류 - ① 노동조합설립신고증

(근로자 단체라 함은 법률에 의해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보장받는 단체를 말한다.)

### ◆ 일반(단체) 서류 - ① 일반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사업자등록증 등)

- ◆ 기타서류(코로나19관련) - ① 방역관리자 지정 및 참석자 명단제출
- ② 사전확인서 제출(첨부파일참조)

## ■ 시설 사용승인 통보

※[화성통합예약시스템홈페이지\(https://reserve.hscity.go.kr/index.do\)](https://reserve.hscity.go.kr/index.do) ->나의예약현황 참조) \* 코로나19 관련하여 추후 승인여부가 변경 될수 있음.

## ■ 심의기준

- 대관일정 및 시간의 적절성여부, 대관장소 수용인원 적절성여부
  - 대관시 주의사항 준수여부
  - 대관시설 사전 협조여부(ex.무대사용시간 등)
  - 시설 사용 신청, 사용 승인 통보 후 취소 신청 여부
  - 사용료 납부 일자 지연 여부
  - 시설물 파손 등의 전력이 있는 신청인(또는 단체)
  - 공연의 내용이나 수준이 우리 대관시설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관 일정 중복시 우선순위는 화성시 근로자 단체>화성시 일반 단체>타 시·도 지역 근로자 단체>타 시·도 지역 일반 단체>동호회 순으로 결정한다.
- ※ 기관 성격이 동일한 단체에서 대관 일정 중복시 ex) 유치원/어린이집/학원 일반단체 등
- 1순위 : 화산동 단체
  - 2순위 : 타 지역 화성시 단체
  - 3순위 : 기타 지역 단체로 우선순위로 함.

## ■ 대관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대관신청은 복지관 관리사무실을 방문하여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 신청서“ 와 ”각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2> 기본사용시간 미만의 사용이라도 기본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3> 매 시간 초과 시 기본사용료의 20%가산, 1시간 미만시 1시간으로 산정하여 정산됩니다.
- 4> **총 대관 신청시간은 공연, 준비, 연습, 철수일정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시간을 기입합니다.**
- 5> 인적사항 및 연락처(휴대전화번호, Fax번호 등)를 정확히 기재하고 기재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 시설사용 신청 후 취소 시에는 취소원을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다음의 경우에는 대관하지 않으며 기 승인된 경우에도 이를 변경 또는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 가.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라. 정치단체 집회 및 정치적 목적과 관련된 집회 또는 행사
  - 마. 특정 종교 활동 및 종교적 행사, 종교 관련 세미나
  - 바. 복지관 대관안내 지시를 위반하거나 승인된 사용목적에 위반하는 경우
  - 사.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대관 시 주의 사항

### 1. 협소한 주차장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합니다.(이면주차 금지)

| 구 분                 | 1회 주차요금<br>(최초 3시간) | 3시간 초과시<br>10분마다 | 1일 주차권 | 월 정기권 |
|---------------------|---------------------|------------------|--------|-------|
| 부설주차장<br>(근로자종합복지관) | 무 료                 | 200              | 6,000  | 미운영   |

2. 대관담당자와 협의된 시간을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부대시설은 대관담당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중 발생한 물품 피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현물로 배상해야 합니다.
4. 복지관 대관시설은 음식물 반입을 할 수 없습니다.
5. 대관 종료 후에 사용 전 위치로 정리정돈 해야 합니다.
6. 사용 기간 동안 행사요원 및 관람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그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대관신청자가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질수 있습니다.
7. 대관 종료 후 행사 진행으로 발생한 쓰레기는 사용자 책임 하에 수거 및 반출해야 합니다.
8. 복지관 대관시설내 테이블 부착을 금지합니다.
9. 복지관 내 모든 시설은 금연 구역입니다.(지정된 흡연구역에서만 흡연)
10. 사용개시 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이용 가능합니다.(미납시 이용 불허)
11. 행사장 무대, 천막, 각종 광고물, 부착물 등 설치시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행사종료 즉시 철거해야 합니다.
12. 대관시설사용 종료 후 대관시설 사용자는 대관시설을 원상태로 복귀시키고 관리실 직원 또는 상황 근무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목적 홀 대관시 주의사항>

1. 대관행사 진행시 디자인, 조명/음향/영상 오퍼레이터, 무대감독 등 행사 진행에 필요한 인력은 복지관에서 지원하지 않으며, 필요시에는 대관신청자 측에서 필요한 전문 인력을 섭외하여야 합니다.
2. 현장비(스피커, 무대조명) 상태로 사용해야 되며, 별도의 장비 반입을 불허 합니다.
3. 부득이 추가장비(스피커, 무대조명, 화상스크린 등)를 반입·설치할 경우 사전에 승인이 필요합니다.
4. 전기 사용량이 높은 장비를 설치 시 사전에 승인을 요합니다.
5. 복지관과 사전 협의되지 않은 프로그램 및 일정은 무대 및 객석, 로비에서 진행 할 수 없습니다.
6. 다목적홀은 음식물을 가지고 들어오거나 먹을 수 없습니다. (사탕, 껌, 카라멜, 커피, 빵 등)
7. 다목적홀 안은 꽃다발을 가지고 들어올 수 없습니다.
8. 객석 계단, 계단 통로에 앉거나 서 있을 수 없습니다.

#### ※ 코로나19 관련 대관운영 안내

- 1일 1개 시설에 한하여 대관
- 평일오전 09시 ~ 오후 21시 내 대관(주말/토요일오전 09시 ~ 오후 18시)
- 대관 목적: 회의 및 교육(체육활동, 행사 등 금지)

※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와 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2020년 10월 13일부터 감염병 예방법으로 시행됩니다. 또한 방역수칙 위반행위로 감염 확산 시 해당 위반자(개인,단체)에게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 ■ 사용료 납부

- 사용자는 **대관 사용일** 2일 전까지 사용료 완납을 해야 합니다.
- ※ 기간 내 미납 시 시설사용이 자동 취소됨

## ■ 문의 및 접수

- 복지관사무실 대관담당 ☎ 031-223-1302 (3번)